

BLS센터운영규정

2015.01.12. 제정 2016.09.22. 일부개정

<BLS센터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라 한다) BLS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BLS센터의 영문 명칭은 Basic Life Support Center(이하 “BLS센터”라 한다)로 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BLS센터 운영 및 교육생 모두에게 적용한다. 다만 상위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상위법령을 따른다.

제4조(사업) BLS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일반인과정 BLS 교육 및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제반 업무
2. 의료인과정 BLS 교육 및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제반 업무
3. 심폐소생 직무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

제5조(교육시간) 교육시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인과정 BLS 교육 : 4시간
2. 의료인과정 BLS 교육 : 8시간
3. 심폐소생 직무교육 : 4시간

제6조(학습비 책정 및 반환) ① BLS센터 교육에 따른 학습비 책정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BLS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BLS센터 운영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**10인** 이하로 구성한다. **(개정 2016.9.22.)**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되며 임명직 위원은 BLS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1. 위원장 : BLS센터장
2. 위원
 - 가. 당연직 : BLS센터장
 - 나. 임명직 : BLS센터 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3. 간사 : 업무 담당자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강사료 책정에 관한 사항
2.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9조(위원회 회의 및 의결) ① 위원회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.